



## 포괄 이민개혁안

2013년 4월 16일 연방상원 8인 위원회의 '2013 국경안전, 경제기회, 이민 현대화 법안 (S744)'의 입법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의 법안은 이민법뿐만이 아닌 포괄적인 개혁안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된 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화되지 않아 소개된 법안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소개된 S744 법안의 불체자 구제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11년 12월 3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사람에 한하여 RPI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Status 를 부여한다.
2. 이민국 수수료(미정) 외 미화 500 불의 벌금과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입국 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RPI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또한 가능하다.
5. 2011년 12월 3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하였지만 추방절차에 의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6. RPI 신분은 6년동안 지속되며 그후 \$500 벌금을 내고 신분을 연장하여야한다.

7. RPI 신분의 비이민자들은 10년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 RPI 는 미국에 지속적인 체류를 증명해야 한다
  - 미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해야만 한다
  - 기존 합법 영주권 대기자들의 적체가 모두 해소되어야 한다
8. 드리머들은 입법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즉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드리머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15세 미만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비이민자를 지칭합니다)

중범죄 3회이상, 경범죄 전과자등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형법상의 기록이 있으시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빙서류들은 쉽지만 복잡하기도 합니다. 학교기록, 병원기록, 은행기록 등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시며 비어있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미국에서 결혼 또는 이혼을 하신 서류, 미국에서 자격증을 따신 서류등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111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5-4646  
Fax: (213) 385-4040  
Email: imin@iminusa.net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Suite300  
Irvine, CA 92606  
Tel: (949) 551-4646  
Fax: (949) 242-4522  
Website: www.iminusa.net